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95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 양부남 • 윤호중 • 장종태

박균택 • 전진숙 • 이해식

조계원 • 민형배 • 김현정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함에 그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5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5.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가.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나. 가목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다. 부타가스
- 라.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 중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7)] Zł OL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5.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u>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u>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u>
	품 및 대마와 흥분·환각 또
	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u>을 말한다.</u>
	가.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나. 가목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
	제, 풍선류 또는 도료
	다. 부탄가스
	라.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ス])

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 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 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약물</u>
·